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7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당신을위한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4.29

3. 정정 사유

-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

4. 정정요구 · 명령관련 여부: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추 가)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 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 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수)	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재투자로 인해 증가하는 좌수는 제외)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좌수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식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산정은 전월말 기준으로 한다.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3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6. (생략)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생략)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16. (생략)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현행과 동일)
제15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6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할·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수익자명부)	제18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	제18조 (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생 략)	⑦ (현행과 동일)
제19조(기준가 격의 계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 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3조 (환매청 구 및 방법 등	⑤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4조(환매가 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 략)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생 략) (삭 제)
제26조(수익증 권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당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 (수익증 권의 환매언기)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 조(수익자 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__그 통지가 수익자 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__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

[illegible]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탁재산의 운용 비용 등)	”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추 가)	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4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 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7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 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 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 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5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추 가)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추 가)	①집합투자업자가 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2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2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2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 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2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 투자업자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52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 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3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__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추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 가)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추 가) (추 가) 11.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__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2. (현행과 동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기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추 가)	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추 가)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